『서울특별시 줍깅 활성화 조례안』에 대한
제 안 설 명

□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!
그리고 선배·동료 의원님 여러분!
더불어민주당 박강산 의원입니다.
『서울특별시 줍깅 활성화 조례안』의
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
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□ 지금부터 『서울특별시 줍깅 활성화 조례안』에 대하여
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□ 먼저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
'줍깅'은 가볍게 걸으며 쓰레기를 주워 건강과 환경을
함께 지키는 활동을 의미합니다.
줍깅의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며
시민의 줍깅활동을 지원해
서울시의 환경 정화 및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했습니다.

□ 다음으로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과 정의를 비롯해 안 제3조에 줍깅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했고, 안 제4조와 제5조에 줍깅 활성화 계획의 수립과 사업 추진 사항을 규정했습니다.
또한 줍깅 활동 인증 및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근거를 안 제6조와 제7조에 담았습니다.

□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!
본 의원은 조례 제정 과정에서 입법예고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.

□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조례 제정 취지를 이해하셔서 환경수자원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,
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